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강명숙 의원)

의 번 호	19-98
---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7. .

발 의 자 : 강명숙, 권영숙, 김기석
김성희, 김종선, 김진천
장덕준, 정혜경

1. 제안이유

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마포구내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
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자 이행사항을 구체화하여 건강
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자 책무 구체화 및 이행사항 신설(안 4조)

-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
-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
-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
-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

3. 관계법령:

- 가.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및 제4조
- 나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8조

4. 입법예고 : 2019. 7. 16.~ 7. 20.

5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6. 조례안: 붙임 참조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,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”를 “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”으로, “구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”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
2.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
3.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
4.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<u>인한 대기오염을 막기</u> <u>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, 연료</u> <u>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</u> <u>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</u> <u>하며, 구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</u> <u>한다.</u>	제4조(사업자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-----</u>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-----</u> ----- 1. <u>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</u> 2. <u>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</u> 3. <u>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</u> 4. <u>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</u>
<신 설>	

【관 계 법령】

■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약칭: 미세먼지법)

[시행 2019. 3. 26.] [법률 제16303호, 2019. 3. 26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,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(이하 "미세먼지등"이라 한다)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·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활동(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■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[시행 2019. 7. 16.] [법률 제16267호, 2019. 1. 15., 일부개정]

제8조(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,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

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·판매·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(工程)을 개선하며,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,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